

[별표 4] <개정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

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(제45조관련)

항 목	기 준
가. 최저자본금	· 3억원
나. 최저자동차대수	· 100대
다. 최저보유차고기준 (대당)	· 승용차: 13 ~ 16m ² · 소형승합자동차: 15 ~ 18m ² · 중형승합자동차: 23 ~ 26m ²
라. 사무실(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경우)	· 수입금관리 · 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추 것
마. 차고(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경우)	· 일상의 점검장비와 세차시설을 갖추 것 · 상용차량을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모이고 포 장되어 있을 것 · 자기소유일 것
바. 주사무소 및 영업 소의 설치	(1) 주사무소 : 특별시·광역시·또는 시에 둘 것 (2) 영업소 : 주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, 항공법 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(공항인근지 역을 포함한다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· 관광 단지 및 관광특구,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업단지가 소재한 군지역에 2개소이상을 둘 것. 다만,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 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하는 자 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10개 시 · 도이상의 지역에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,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간에 온라인전산망을 갖추 것

1.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최저보유대수를 초과한 보유대수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감할 수 있으며, 타인소유토지(차고지를 포함한다)를 3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 차고지는 이를 자기소유차고로 본다.
2. 차고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3. 위표의 바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안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안에 한하여 영업소 설치가능지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4.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 에 반드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.
5.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의 위치, 보유차종 및 차량의 원활한 출입 등을 참작하여 위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면적을 당해사업자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으로 한다.